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8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9. 24.

발 의 자 : 안호영 · 윤미향 · 윤준병  
송옥주 · 임종성 · 양이원영  
이수진비 · 진성준 · 이소영  
김수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-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방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 및 국토-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, 앞으로는 시·도의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, 시·군·구의 환경계획은 시·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-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-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, 그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지자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(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).
- 나.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승인 절차 마련(안 제18조제2항,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삭제,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).
- 다.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(안 제19조제4항 신설).

##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‘수립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’를 ‘수립하여야 한다’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,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시·도 환경계획의 승인) ① 시·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·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

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승인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·도 및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·도 환경계획 및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립·변경하

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시·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<u>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.</u>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<u>시·도지사는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8조(시·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수렴하여야 한다.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,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8조의2(시·도 환경계획의 승인) ①</u> 시·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</p>

제19조(시·군·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·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·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(시·군·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⑤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9조의2(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승인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



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 
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 
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 
야 한다.